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4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이명수 · 윤상현 · 김기현

성일종・홍문표・조수진

김희국 • 태영호 • 박성중

최승재 · 최형두 · 김성원

유경준 의원(13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함(안 제6조).
-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시·군·구의 관내 거주자로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함(안 제7조).
- 라. 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대장이 추천하여 경찰서장 이 위촉하도록 하고, 직무 태만이나 비행 또는 부조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광역단위의 자율방범연합회, 기초 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 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방범업무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체계적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방범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제5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조직)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대장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부대장·고문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대장은 자율방범대를 대표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자율방범대의 구성・운영 및 대장 선출 방법 등 그 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렁로 정한다.

- 제5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범위)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3. 기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
- ②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요청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요청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7조(자격요건) 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율방범대가 소재한 시·군·구의 관내 거주자로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19세 미만인 사람

-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 6. 제11조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
- 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풍속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 9.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② 자율방범대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에서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추

천을 받아 위촉한다.

- ② 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자율방범대의 대장을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연합대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③ 경찰서장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연합대의 구성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연합대장으로 위촉한다.
- ④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연합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연합회장으로 위촉한다.
- ⑤ 자율방범대장·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⑥ 자율방범대장·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 ⑦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제9조(복장 및 장비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 렌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가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금지행위) ①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2.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하여 비행이나 부조리를 저지르는 행위
 - 3. 자율방범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율방범대원으로서 부적합한 행위
 - ②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소송분쟁, 그 밖에 단체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 ③ 자율방범대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전 90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명부를 비치·관리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한다.
 - ②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자율방범대원의 방범활동을 지도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의 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훈련 등) 경찰서장등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 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활동범위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재해보상)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 수행이나 방범업무 관련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15조(연합회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연합회 및 시 ·군·구에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연합회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시·군·구 연합대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

자치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다.

- ③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대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자율방범활동이나 방범업무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 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제1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준용한다.
- 제19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가 이 법 시행 후 3 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로 본다.